

#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251
------	------

제출일자 : 2022. 11. 10.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금천구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재)금천미래장학회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대상 : (재)금천미래장학회
- 나. 출연내용 : 금천미래장학회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출연금 지원  
※ 출연된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 확대 · 활성화
- 다. 출 연 금 : 1,000,000천원
- 라. 연도별 장학기금 조성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현재 기본재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금조성 누적 목표액		3,240	4,400	5,800	7,200	8,600	10,000
연도별 조성 목표액		-	1,160	1,400	1,400	1,400	1,400
재원 구분	구 출 연 금	2,6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간 기탁금	640	160	400	400	400	400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출 연 금	2,600	350	250	500	1,000	500

마. 출연근거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2)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3. 출연의 필요성**

가.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이자수익금 증가로 장학사업 활성화

나. 법인·개인 기부금만으로는 기본재산 증자에 한계가 있음

다. 장학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구 출연금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재단으로 전환할 기반 마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2)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기타사항

- 1) 금천미래장학회 운영현황

## [재)금천미래장학회 운영현황

### □ 일반현황

- 설립등기 : 2007. 11. 14.
- 설립근거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임원현황 : 이사 15명(비상근, 무보수, 4년), 감사 2명(비상근, 무보수, 2년)
- 사업목적 : 금천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양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
- 운영방법 : 기본재산 이자수익 및 기부금 활용하여 장학사업 추진
- 장학기금 현황

(2021.12.31.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금 액	3,697,794	3,240,000	457,794

### ○ 연도별 기본재산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현 재	2016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기본재산 누계	3,240	3,240	3,230	2,670	1,470	750	500	
재원 구분	소 계	3,240	10	560	1,200	720	250	500
	구 출 연 금	2,600	-	500	1,000	500	250	350
	민간 기탁금	640	10	60	200	220	-	150

### ○ 2021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당기순이익
	기부금	이자수입	장학금 지급	운영비	
금 액	161,915	61,328	165,800	6,325	51,118

## [재)금천미래장학회 운영현황

### □ 사업추진현황 (2021.12.31.기준)

○ 장학생 선발 지원 : 총 1,507명 / 2,073,626천원 지원

○ 도전! 글로벌 탐험대 선발 지원 : 총 73명

※지정분야: 뉴욕 19명, 네팔 13명, 라오스 10명 / 비지정분야: 31명

○ 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연 도	계		초·중·고생		대학생		기타(단체 등)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b>합 계</b>	<b>1,507</b>	<b>2,073,626</b>	<b>1,395</b>	<b>1,891,626</b>	<b>105</b>	<b>172,000</b>	<b>7</b>	<b>10,000</b>
2021	111	165,800	108	162,800	3	3,000		
2020	87	119,700	87	119,700				
2019	128	142,184	118	132,184	10	10,000		
2018	144	172,838	134	162,838	10	10,000		
2017	153	194,394	153	194,394				
2016	116	175,050	116	175,050				
2015	177	183,700	171	175,700	2	4,000	4	4,000
2014	127	178,700	124	173,700	2	4,000	1	1,000
2013	159	282,600	145	254,600	14	28,000		
2012	127	207,500	116	185,500	11	22,000		
2011	76	104,160	50	75,160	24	24,000	2	5,000
2010	27	54,000	18	27,000	9	27,000		
2009	38	48,000	28	28,000	10	20,000		
2008	37	45,000	27	25,000	10	20,000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재정지원)

-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